

# 「구미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」

## 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4년 5월 7일

나. 발 의 자: 김재우 · 김근한 · 김낙관 · 김민성 · 김원섭 ·  
김정도 · 박교상 · 신용하 · 양진오 · 이정희 ·  
이지연 · 정지원 · 추은희 의원(13인)

다. 회부일자: 2024년 5월 8일

라. 상정일자: 2024년 5월 17일

제27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### 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김 재 우 의원

#### 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·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,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함.

#### 다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시장의 책무, 적용범위(안 제3조~제4조)

-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·시행(안 제5조)
- 공공자금 운용 원칙(안 제6조)
- 의회 제출(안 제7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 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, 제141조
  - 「지방재정법」 제3조, 제9조
  - 「지방회계법」 제38조
  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2조
  -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제36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장 창 곤

- 본 제정조례안은
  - 공공자금 관리계획 수립, 운용 원칙을 규정하고 의회에 운용 상황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,
- 검토 결과,

제 정 안
<p>제5조(계획 수립·시행) ① 시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구미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 월별·분기별 세입예산 징수 종합계획</p>

2. 월별·분기별 세출예산 배정 및 집행 종합계획
3. 월별·분기별 공공자금 배정 및 집행계획
4.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• 안 제5조는 시장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·시행하도록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,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자금 운용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.

또한, 집행기관에서는 매년 수립하는 관리계획과 별개로 더욱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공공자금 운용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임.

#### 제 정 안

제7조(의회 제출 등) ① 시장은 「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에 따라 보고받은 공공자금 운용 상황 보고서를 상·하반기 별로 구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공공자금 운용 상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예금과목별 금액
2. 예치기간
3. 금융상품별 수익률
4. 이자수입 총액
5. 그 밖에서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• 안 제7조는 금고가 시장에게 반기별 보고하는 공공자금 운용 상황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, 공공자금 운용에 대한 행정 감시 및 사후적 통제를

강화하여 공공성,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- 다만, 제1항의 의회에 대한 보고서 제출 시기와 방식에 대하여는

“① 시장은 「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에 따라 보고받은 공공자금 운용 상황 보고서를 상·하반기 별로 구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” 를

“① 시장은 「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에 따라 보고받은 공공자금 운용 상황 보고서를 다음 회기 중에 (업무관련 담당 과장이) 구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” 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장이 금고에서 보고서를 받은 후 가장 빠른 회기의 상임위원회 회의에 “보고의 건” 을 제출하여 소관부서 과장이 보고토록하는 등 충실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5. 토론요지: 생략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7. 심사결과: 수정가결